

## 체육단체 선진화를 위한 구조 개편 권고

### I. 권고

2020년이면 대한체육회 창립 100주년(1920년 7월, 조선체육회 창립)이 된다. 역사의 우연한 선물이지만 ‘100주년’이 갖는 의미는 상당하다. 스포츠는 일제 강점기의 민족적 수난을 견디는 힘이었고 해방 이후 개발도상 과정에서 당시의 시대적 요청이었던 ‘국위선양’의 상징이었다.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적 차원의 정치, 경제, 외교, 문화, 과학기술 등 각종 지표에서 세계 10위권에 도달하였다. 사회 내부적으로도 민주성, 자율성, 다양성의 가치가 확산되어 국민들은 국제대회에서 뛰어난 성과를 내는 것에 더하여 모두의 일상 속에서 스포츠의 다양한 가치가 실현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밖으로는 과거와 확연히 달라진 국가 위상에 걸맞게 세계 스포츠 무대에서 평화와 우애와 연대의 스포츠 문화를 확산해야 하며 안으로는 국민 저마다의 일상이 스포츠를 통하여 소외와 고립 없이 활기차게 전개되는 스포츠복지 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해야 한다. 이것이 대한체육회 창립 100주년에 거는 국민적 열망이며 변화된 시대의 새로운 ‘국위선양’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스포츠는 위기와 도전의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국제적인 스포츠의 가치와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국내 각 스포츠 분야의 불균형성을 개선해야 한다. 무엇보다 인권침해, 각종 차별, 부정비리 등의 문제 또한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때에 국내 스포츠를 대표하는 대한체육회의 역할과 책무는 더없이 막중하다.

대한체육회는 연간 4천억 원에 가까운 예산 대부분을 정부와 공공기금을 통해 지원받고 있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분야에서 발생해온 중대한 인권침해와 각종 비리 및 부조리 등에 대하여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다. 2016년 국민생활체육회와 통합하면서 생활스포츠 기반의 엘리트스포츠 육성을 목표로 제시하였으나 올림픽과 엘리트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고, 생활스포츠에 대한 관심 부족 및 학교스포츠와의 연계 부재 등 한계를 노정해왔다. 오히려 대한체육회는 국가올림픽위원회(NOC)로서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내세워 국내 스포츠계의 대표 단체이자 공공기관으로서 요구되는 공적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마저 보여 왔다.

이제 대한민국의 스포츠는 기존의 ‘스포츠 강국’에서 벗어나 ‘스포츠 선진국’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 학교스포츠, 생활(평생) 스포츠, 엘리트 스포츠의 균형 있는 공존·발전을 통해 모든 사람의 스포츠 및 신체 활동에 대한 보편적 참여와 향유할 권리, 즉 ‘스포츠권(the right to sports)’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문화적 혁신이 필요하다.

스포츠혁신위원회(위원장 문경란, 이하 위원회)는 여섯 차례에 걸쳐 한국 스포츠의 한계와 문제를 면밀히 진단하여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처방들을 정부와 관계기관에 권고해왔다. 이제 한국 스포츠의 혁신과 변화를 위해 국가 스포츠 정책의 실질적인 사업 수행 주체로 역할해온 대한체육회의 구조 개편에 대해 권고하고자 한다.

대한올림픽위원회(KOC)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헌장에 따른 독립성과 자율성에 기반하여 국제 스포츠무대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며, 대한체육회는 ‘모두를 위한 스포츠(Sports for All)’ 정책에 기반하여 스포츠복지 사회의 실현과 이를 통한 선진적인 엘리트스포츠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바, 이에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1. 대한올림픽위원회와 대한체육회는 분리한다.

- 1) 정부와 국회는 양 기구의 원활한 분리 절차 및 합리적 역할 재조정을 위해 국민체육진흥법의 관련 조항을 조속히 개정한다.
- 2) 양 기구의 분리 시기는 2020 도쿄올림픽 등의 원만한 수행 등 현실적 필요를 감안하여 2021년 상반기로 한다.
- 3) 정부는 체육단체 분리 관련 법률 개정 이후 대표성, 독립성, 전문성이 보장된 '체육단체구조개편위원회'를 구성하고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한다.
- 4) 체육단체구조개편위원회의 주요 의제는 조직, 인력, 정관 개정, 자원 배분, 회원종목 단체와의 관계, 선수층의 위상과 소속 등으로 한다.

## 2. 대한올림픽위원회는 IOC 헌장을 준수하며, 올림픽 등 세계 스포츠대회 대표선수단 파견 및 대회 유치, 한국 스포츠의 세계 경쟁력 강화 및 스포츠를 통한 국제 사회의 평화와 우애 증진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한다.

## 3. 대한체육회는 생활(평생)스포츠와 엘리트스포츠 등 국내 스포츠 영역과 조직 등을 포괄하는 대표 단체로 국내법과 관련 제도의 규율 하에 보편적 인권과 공공성의 가치에 기반하여 스포츠복지 사회 실현을 위한 각종 사업, 서비스, 프로그램 등 '모두를 위한 스포츠' 정책을 추진한다.

## Ⅱ. 스포츠 패러다임 전환과 체육단체 구조개편

### 1. 체육단체 구조 개편의 근거

근대 스포츠 운동은 유럽 등 많은 나라들에서 민주적 시민사회 발전, 국민국가 형성, 사회통합 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냉전 시기 양 체제의 상징적 경쟁 수단이 되기도 하였다. 대한민국의 경우 권위주의 정권 시기에 남북간 체제 우위 경쟁, 개발도상국가의 국가 위상 제고 등에 의하여 국가주의 스포츠정책이 압도하였다. 20세기 중후반에 스포츠선진국들이 중장기적으로 ‘모두를 위한 스포츠’ 정책을 통해 전후 사회 복구, 스포츠를 통한 사회 관계 형성, 전국민의 참여에 기반한 스포츠복지 사회를 구현해 나갈 때, 한국은 이같은 동시적 흐름과는 괴리된 국가주의 스포츠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시대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특히 대한민국의 스포츠는 1990년 이후 한국사회의 정치 민주화, 경제 성장, 문화 다양성이라는 사회 전반의 획기적인 구조 변화에 부합하지 못하여 각종 인권침해, 부정과 비리, 스포츠인들의 사회적 고립, 스포츠 조직의 불건전성 등 많은 문제와 한계를 노출해왔다. 이런 상태가 한 세대 가까이 지속되면서 ‘시대적 한계’는 당대의 ‘구조적 한계’가 되었으며 나아가 대한체육회라는 구체적인 ‘체육단체의 한계’로까지 이어졌다.

#### 1) 공공성의 강화

국내 스포츠의 대표 단체이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의 위상을 갖춘 대한체육회 중심의 기존 스포츠 조직은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해결 하지는커녕 오히려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어 시급한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 2014년 본격화된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 논의 과정에서 이 문제를 개선하지 못한 채 2016년 통합 체육회로 출범함으로써 엘리트스포츠 중심의 패러다임을 공고화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최

근 대한체육회장 선출 방식의 변경 또한 그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통합 체육회에 대한 민주적, 공적 관리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특히, 대한체육회가 대한올림픽위원회를 산하기구로 통합한 조치(1968년의 조직 통합 및 2009년의 정관 통합)가 불러온 부정적 효과에 주목한다. 이는 대한체육회가 과도한 엘리트스포츠 지향 및 올림픽 경기력 중심의 정책과 사업을 벌여온 핵심 기제를 제공하였고, 국가올림픽기구(NOC)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내세워 정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투명성, 합리성, 공공성 등의 가치 구현)를 회피하도록 하는 단초가 되었다.

그러나 이는 대한체육회를 비롯한 공공기관들의 제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적, 행정적 차원에서 규율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07. 1. 제정)이나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2018. 3. 제정) 등에 기본적으로 위배된다. 동 법률과 지침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이사회 구성 등 인사 전반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하며, 임직원에게도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과 사회적 책임성이 요구된다. 또한, 예산 운용을 투명하게 하고 조직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특히, 안전하고 건강한 공동체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및 공공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현대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 질서에 기반한 이 기준들이 대한체육회에 적용되지 않아야 할 예외적 사유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제라도 정부는 대한체육회가 스포츠 분야를 대표하는 기구이자 공공기관으로서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게끔 적극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요점은, IOC가 개별 국가의 NOC와 관련된 상위 기구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IOC는 개별 국가 내부의 스포츠 증진 정책 일반에 대하여 '우월한 입장에 있는 상위조직'이 아니다. 개별 국가가 자국의 조건과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스포츠 정책을 수립하고

이로써 국민의 스포츠권, 건강권, 문화권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은 IOC 현장이 천명하고 있는 ‘압력이나 침해’와는 무관하다. IOC 현장은 ‘각국 NOC의 올림픽 운동에 대한 국가, 자본 또는 그 밖의 단체가 행사하려는 명백하게 ‘부당한’ 압력과 침해를 방지하고자 함이며 결코 개별 국가의 스포츠 정책 일반에 관하여 관계하지는 않는다.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저마다의 조건과 필요에 따라 NOC, 체육단체, 재단 등을 자유롭게 구성하거나 개편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KOC와 대한체육회의 ‘분리’ 또는 ‘통합’은 올림픽 현장의 ‘압력이나 침해’와는 무관하다.

## 2) 국제적인 스포츠 ‘굿 거버넌스’ 운동

국제적 환경의 변화 또한 스포츠 단체의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스포츠가 특정한 종목이나 분야를 넘어 국제사회의 주요 영역으로 그 범위와 영향력이 크게 확장됨에 따라 IOC, FIFA 등 국제 스포츠 기구는 개별 스포츠 단체 및 각국 스포츠 기구의 조직 건전성과 공공성을 중요한 개선 과제로 삼고 있다.

‘스포츠에서의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 확립이 그것이다. 2009년 IOC는 코펜하겐에서 “올림픽과 스포츠운동의 굿 거버넌스에 관한 기본적 보편 원칙(Basic Universal Principles of Good Governance of the Olympic and Sports Movement)”을 천명하였다. 이 원칙에 따라 2012년 유럽올림픽위원회(EOC: European Olympic Committees)는 스포츠 기구의 진정한 자율성을 위한 프로젝트 그룹 ‘S4GG(Sport for Good Governance)’를 발족하였다.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등 유럽의 스포츠 선진국 연구소 등이 참여한 S4GG 프로젝트는 스포츠 조직의 굿 거버넌스 실천에 필수적인 ‘기본 지침’을 제시하였다. 이 ‘기본 지침’은 전체 구성원의 민주적 참여 보장, 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 강화, 공동체 가치 실현에 따른 사회 전반의 신뢰 구축, 권력의 집중과 남용 방지, 조직의 비전 제시와 장기 발전

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다.

스포츠에서 ‘굿 거버넌스’가 요구되는 것은 스포츠 그 자체의 특징, 즉 대중에게 지속적으로 공개되는 행위라는 점에 있다. 스포츠가 범지구적 차원에서 수많은 대중과 미디어에 공개(중계)되는 행위인 바, 이로 인하여 대중과 미디어는 지도자와 선수뿐만 아니라 스포츠 기구(IOC 등)와 조직(각국 체육단체 또는 각 종목단체)에 대해서도 열렬한 관심을 갖게 된다. 선수와 해당 종목에 대한 강렬한 감정은 지도자와 해당 조직 및 그 대표자에 대한 관심으로까지 직결된다는 점에서 여타의 기업이나 사회 조직과 달리 스포츠 기구와 조직은 ‘굿 거버넌스’ 확립에 철저해야 한다.

관심, 응원, 사랑 등의 열렬한 감정에 기반하여 지도자와 선수가 활동하게 되고 이로써 올림픽 등 국제 대회 운영 및 스포츠산업, 마케팅, 외교까지 촉진된다. 그러므로 대중적 관심과 사랑에 기반한 스포츠 기구와 조직은 반드시 굿 거버넌스를 실현해야 한다. ‘굿 거버넌스’를 실현하지 못할 경우 대중의 사랑과 관심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거센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아울러 각종 사업이 위축되거나 그 기구와 조직에 대한 브랜드 가치가 하락하여 기업의 후원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결국 상급 단체 또는 해당 국가로부터 일정한 제재까지 받게 된다.

우리의 경우에도 각종 국제대회에서 가치 있는 성적을 냈을 때 선수는 물론 해당 지도자와 그 종목 단체에까지 아낌없는 성원이 이어지는가 하면 각종 인권침해와 부정비리가 발생했을 때 체육단체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쇄도하는 것에서 ‘굿 거버넌스’의 의미는 충분히 확인된다. 특히 대한체육회를 비롯한 각종 스포츠 기구와 조직들이 예산의 대부분을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있다는 점에서 IOC가 제시한 ‘스포츠 굿 거버넌스’의 여러 요건 중에서도 ‘공공성과 민주성의 강화’는 절대적이다.

이상 살펴본 것처럼 과거 권위주의 시기에 구축된 스포츠 시스템의 한

계, 인권침해와 각종 비리 등에 대한 스포츠 조직의 공적 책무 방기, 스포츠 조직의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는 국내외의 시대적 요구와 흐름 등을 고려할 때 대한체육회 등 국내 체육단체의 구조를 개편하여 조직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이에 근거한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수립 하는 등 스포츠 조직과 기구의 공공성을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 2.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의 통합 및 분리의 역사

### 1) 통합 및 분리의 시사점

대한체육회는 1920년 조선체육회로 발족하여 일제 강점기의 독립운동 및 해방 이후 신생 국민국가 형성 과정에 체육 분야의 대표 단체로서 국민의 신체와 정신 함양 등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올림픽 경기력 제고, 엘리트선수 육성 강화 등에 주력하기 시작했다. 특히, 1968년 당시 상당한 사회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한올림픽위원회를 산하 특별위원회로 통합하면서 엘리트스포츠 지향은 더욱 강화되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이 개최되고 이후 국민들의 생활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대한체육회는 대한올림픽위원회를 산하에 두고 엘리트스포츠 지향을 표방하였다. 이에 1991년 국민들의 생활체육 활동 증진을 목표로 한 별도의 ‘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발족하였으며, 이는 대한체육회가 정관에 명시한 학교체육, 생활체육, 엘리트체육의 유기적 발전 목표와 괴리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대한올림픽위원회는 1947년 대한체육회 전신인 조선체육회 내에 설립되어 IOC에 가입하였으며, 1964년 9월 8일 문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사단법인으로 정식 출범함으로써 대한체육회와 분리되었다. 그러나 1966년 방콕아시아경기대회의 선수파견 문제로 대한체육회와 갈등이 심화되어 1968년 3월 1일 대한체육회와 다시 통합되었으며, 이후 대한올림픽위원

회는 대한체육회 산하 특별위원회 형태로 존재하면서 그 위상이 축소되었다. 대한올림픽위원회는 2009년 6월 대한체육회에 완전히 흡수 통합되면서 그 위상과 역할이 더욱 축소되었다. 그 전까지 대한체육회 정관과 별개의 규정에 근거해 운영되던 대한올림픽위원회는 정관 통합 이후 대한체육회로부터 더욱 강한 통제를 받게 되었다.

대한체육회는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2016년 리우올림픽과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 이르기까지 엘리트스포츠 육성 강화에 그 역량을 집중하였고, 모든 국민을 위한 생활스포츠의 발전은 정책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났다. 대한체육회는 국내 체육단체들의 대표기구로 올림픽 및 엘리트스포츠만을 지향할 이유가 없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산하 기구 성격의 대한올림픽위원회와 결합된 점을 근거로 올림픽지상주의, 엘리트스포츠 우선주의를 추구해왔다. 무엇보다 대한체육회는 잘못된 행태가 제기될 때마다 대한올림픽위원회의 독립성을 주장하며 정부의 관리 감독을 회피하거나 방어해왔다. 이로 인하여 대한올림픽위원회의 ‘자율성’이 침해되고 대한체육회의 ‘공공성’은 훼손되었다.

이런 문제적 상황 때문에 오랫동안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의 분리 논의가 다양한 차원에서 진행되어 왔다. 경우와 상황에 따라서 각종 체육 단체 및 체육 전문가들은 이 분리 논의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왔다. 계기별 상황이나 시대적 조건의 변화에 따라 여러 단체들이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 2014년 11월, 문체부차관, 대한체육회장, 국민생활체육회장, 새정치민주연합 체육특별위원장 등은 당장 중요한 현안인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을 추진하기로 하고 대한올림픽위원회의 분리 여부는 19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하고 서명한 사실이 있다.

## 2) 올림픽헌장 제27조 9항의 정확한 이해

그럼에도 대한체육회는 ‘올림픽헌장 제27조 9항’에 따라 국가올림픽위원

회(NOC)가 정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의사 표명을 저해 받을 경우 국제 올림픽위원회(IOC)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따라서 이 조항에 대한 분명하고도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올림픽헌장 제27조 전체는 NOCs로 하여금 “자국 내의 올림픽 운동을 발전·증진·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9항에서 “해당 국가에서 발효 중인 헌법, 법률 또는 기타 규정 및 정부나 기타 기관의 행위로 인해 NOC의 의사 표명이 저해될 경우, IOC 집행위원회는 해당 NOC에 내린 인준을 정지하거나 철회하는 등, 해당 NOC 소속 국가에서의 올림픽 운동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강조하건대, 이 조항의 핵심은 IOC가 해당 국가에서의 “올림픽 운동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결정”을 하여 NOC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개별 국가의 독자적인 자국 내 스포츠 정책에 관여하거나 자국 내 체육 단체 공공성 강화를 위한 해당 국가의 고유하고도 독자적인 정책에 관여하기 위함이 아니다.

세계 여러 국가들이 자국의 고유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 스포츠 정책을 독자적으로 수립·추진함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자국 내 스포츠 대표단체와 자국 NOC의 관계 또한 전적으로 자국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분리’하거나 ‘통합’하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자국 내 생활 문화 여건이나 스포츠 환경의 변화에 따라 ‘분리’하였다가 ‘통합’하기도 하고 ‘통합’하였다가 ‘분리’하기도 한다는 점이다.

이때 결정적인 판단 근거는 자국 NOC의 ‘자율성 보장’과 자국 스포츠 대표단체의 ‘공공성 강화’다. 만약 이 두 핵심 요소가 여러 요인에 의하여 혼선이나 충돌을 빚어 자율성이 제약되거나 공공성이 훼손될 경우, 혹은 두 상황이 맞물려서 동시에 발생할 경우 각국은 독자적 판단에 따라 ‘분리’할 수도 있고 ‘통합’할 수도 있다.

한국의 경우, 십수년 동안 ‘통합’된 상황에서 많은 구조적 문제를 낳고

있어 미래지향적인 ‘스포츠선진국’으로 가기 위하여 ‘분리’를 지속적으로 논의해온 것이다. 요컨대 대한체육회 내에 대한올림픽위원회가 위치하고 있어 ‘올림픽 운동’과 무관한 국내 스포츠 분야의 문제 발생 및 그에 따른 개선 조치, 장기적인 스포츠 정책의 수립과 공공성 강화 등 완전히 독자적인 자국 내 스포츠 사안에도 올림픽헌장 제27조 9항이 무리하게 과잉 해석·적용해 왔다.

따라서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의 분리를 통해 이 혼선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대한체육회는 국내 대표적인 스포츠 공공기관으로 국내 스포츠 사업을 총괄하고 대한올림픽위원회는 그야말로 올림픽헌장 제27조 9항이 보장하는 자율성과 독립성에 기반하여 국제적인 스포츠 외교 및 올림픽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올림픽헌장 제27조 9항’에 위배되지 않는다.

### 3. 대한체육회의 구조적 한계

#### 1) 인권 침해 등의 문제와 자정 능력의 상실

대한체육회는 진천선수촌을 포함한 스포츠 분야 전반의 폭력, 성폭력 등 주요 인권침해 사례와 실태가 제기될 때마다 체육계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하고 인권침해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점 등에 대하여 광범위한 사회적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대한체육회는 스포츠 분야 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안이한 인식과 전문성의 한계로 인해 제대로 된 조사와 구제 활동을 벌이지 않았고, 오히려 사실을 축소하기도 했다. 진천선수촌에 대한 스포츠인권 제도를 일부 도입하기는 했지만 일부 운동부 지도자에 의한 개인적 일탈로 치부할 뿐 만연된 엘리트스포츠시스템으로 비롯된 구조적 문제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과 인식으로 스포츠계 인권침해는 해소되기 어렵

고, 대한체육회가 독립성과 자율성을 주장하며 자정 작용만을 고수하는 상황이다.

## 2) 조직의 역할과 임무 방기

대한체육회는 체육회 본연의 임무인 생활(평생)스포츠 활성화 및 학교스포츠 연계 강화 등의 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1991년 국민생활체육회 발족을 앞두고 엘리트체육 지향을 천명하였고, 이로 인해 국민생활체육회의 별도 설립이 불가피하였다. 국민생활체육회의 발족은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의 이원화를 불러일으켰고, 결국 두 단체는 2014년 이후의 통합 논의를 거쳐 2016년 통합 체육회로 출범하여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의 병행 발전을 수용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국민생활체육회와의 통합 이후에도 대한체육회는 올림픽이나 엘리트체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생활체육 영역을 소홀히 다루어왔다. 대한올림픽위원회의 조직 목표인 올림픽스포츠 육성이 대한체육회 목표에 이식되어 있는 한 대한체육회가 스스로 엘리트스포츠 지상주의를 탈피하기는 어렵다.

## 3) 방만하고 부적절한 조직 운영

대한체육회는 기존의 조직 운영 관행과 문화를 전면적으로 쇄신하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2018년 대한체육회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것처럼, 대한체육회는 이사회 이사 및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부적절한 인사를 위촉했고, 직무 관련 금품수수, 비위, 횡령 등의 사유로 징계 받은 인사를 사면했으며, 제명해야 할 인사의 처벌을 구체적 기준 없이 감경하기도 했다. 폭행 사건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 정도로 취급해 경미한 징계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국제대회와 관련하여 무자격업체에 공사를 맡기는가 하면, 위법한 통합공사를 발주하고 하도급 관리를 부적절하게 진행하기도 하였다. 물의를 일으킨 회원종목단체 관리 지정을 미루거나 비리 지도자를 국가대표 감독 등으로 계속 채용하였다. 나아가,

회원종목단체 및 시·도체육회에 대하여 임원 인준권, 각종 규정 승인권 등을 통해 각 단위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고 있다.

#### 4) 공적 관리 감독의 부재

이처럼 문제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체육회 및 산하 단체들에 대한 제대로 된 공적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2016년 2월, 통합 정관을 만드는 과정에서 대한올림픽위원회를 내세워 IOC 현장의 국가올림픽기구(NOC)에 대한 자율성 보장 논리를 대한체육회에도 적용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올림픽위원회와 통합된 대한체육회 중심적인 정관 마련을 방임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지금처럼 예산의 대부분을 국가보조금에 의존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 감독이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지는 비합리적, 비민주적 상황이 초래되었다. 대한체육회는 국가올림픽기구로서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주장하기 이전에 공공성과 책임성을 우선적으로 갖춰야 할 것이다.

이에 위원회는 국내 스포츠 패러다임의 전환 및 체육단체 구조의 혁신을 위해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의 분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양 기구가 본연의 목적에 맞게 거듭나야 한다고 판단한다.

또한 위원회는 기존의 ‘스포츠 강국’에서 벗어나 ‘스포츠 선진국’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학교스포츠, 생활(평생) 스포츠, 엘리트 스포츠의 균형 있는 공존, 발전에 국가(담당 부처 문체부)가 본연의 권한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한다. 대한민국 스포츠 정책에 있어 고도의 권한과 책임을 지닌 문체부는 합리적인 관리 감독을 통하여 각 스포츠 정책과 사업에 있어 그 공공성을 엄정히 수행할 책무가 있다.

#### 4. 대한체육회의 공공성 강화와 책임 있는 자율성

대한체육회는 정부 예산을 95% 이상 지원받고 있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준정부기관’에 해당된다. 동법에 따르면,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 전체 수익액이 총수익의 1/2 이하인 경우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고, 이 경우 대한체육회는 준정부기관의 의무에 해당하는 기관장 임명, 임원 임명 및 해임, 예·결산 감독 및 평가 등에서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대한체육회는 대한올림픽위원회와 통합한 이후 IOC 헌장을 내세우며 대통령이 대한체육회장을 임명할 경우 자율성과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해 줄 것을 주장하였고 2019년 현재에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문체부 소관 기타공공기관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영역에서 관리를 받아야 한다. 특히, 정부로부터 예산의 거의 대부분을 지원받고 있는 대한체육회는 공공기관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하여 정부의 관리 감독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대한체육회는 정관 제51조에 따라 예산 편성과정에서 주무부처의 협의와 조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며, 결산에 있어서도 결산서를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현실에서 대한체육회는 정관과 기타공공기관의 특수성 및 KOC의 자율성을 이유로 정부의 관리 감독에 형식적으로 대응하거나 회피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 비춰볼 때,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의 분리는 국가올림픽기구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 원칙을 구현하는 동시에 국내 스포츠 정책 및 사업의 총괄적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대한체육회의 공적, 민주적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스포츠를 포함한 문화예술은, 일반 시장 경제와 달리 공적 자원의 투입을 일률적으로 계량화하기 어렵고 기대 효과 역시 투입한 만큼 산출되지는 않을 수 있다. 스포츠가 지닌 경쟁성, 임의성, 외적 변수 등을 감안할 때, 스포츠에 대한 공공 지원은 기본적으로 스포츠 단체 및 스포츠 활동 참가자들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다수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공공 정책 및 사업은 국가와

공공당국의 책임을 수반하는 행위라는 점이 함께 강조되어야 한다. 사회적 측면에서 스포츠는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 문화적 영역이자 활동이며, 국가의 스포츠 정책 및 사업을 집행하는 기능을 가진 체육단체는 자율성 원칙과 더불어 공적 책임성을 실현해야 한다. 이른바 ‘팔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에 입각한 민간단체의 자율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국가의 재정 지원을 상당 수준으로 받는 단체나 법률에 근거한 법정 법인의 경우 그에 상응하는 공적 책임을 당연히 실천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팔길이는 공공성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 5. 스포츠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대한체육회 역할 재정립

그동안 대한체육회는 2014년 대한체육회-국민생활체육회 통합 시 엘리트 및 생활 체육의 균형 발전에 관한 합의 및 2016년 국민생활체육회와 통합 후 생활체육 진흥, 생활체육 기반 엘리트체육 육성이라는 조직 비전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지속적인 사회적 요구와 자발적 대외 약속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정책 및 사업 수행과 조직 운영 등의 측면에서 대한체육회는 변화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다. 통합 체육회 출범 이후에도 생활체육 부문은 인력이 31명으로 전체 비중이 14% 정도에 머물고 있는 반면 전체 직원의 44.6%인 103명이 진천선수촌(훈련본부)에 배치되어 있다. 현재 대한체육회 조직은 엘리트부서와 생활부서로 이분화되어 있고 대회도 엘리트대회와 생활대회로 분리되어 있으며 선수등록 또한 선수와 동호회로 분리되어 철저히 이분화 하고 있다.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의 균형 발전은 현재 한국 체육계의 중요한 현안이며 특히 엘리트체육 육성방식에 대한 개편은 매우 중요한 개혁 의제이다. 그러나 대한올림픽위원회가 대한체육회에 통합돼 있는 상황에서 기존 엘리트주의적 스포츠 패러다임을 ‘모두를 위한 스포츠’ 원칙에 기반

한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실제로 2년 단위로 하계 올림픽과 동계올림픽이 번갈아 치러지며 올림픽이 열리지 않는 기간에도 2년 단위로 하계아시안게임, 동계아시안게임이 개최된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주어진 현실에서 현재처럼 대한체육회 구조를 유지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그 중심 업무 결정과 각종 인적, 물적, 재정적 자원의 투여는 이들 국제 대회 사이클에 맞추게 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기존 엘리트스포츠 시스템의 구조적 유지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한체육회는 대한올림픽위원회와 분리할 필요가 있으며, 이 기반 위에서 생활스포츠 저변 확대를 통한 엘리트스포츠의 지속가능한 토양 조성, 스포츠클럽 육성을 통한 ‘모두를 위한 스포츠’를 실현을 해야 한다. 이러한 선진적 스포츠시스템 토양 위에서 육성된 국가대표선수들이 대한올림픽위원회의 독립적, 자율적 육성과 관리 하에서 올림픽 및 국제대회에 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6. IOC 현장에 따른 대한올림픽위원회의 기본 임무와 역할

대한올림픽위원회는 이제 IOC현장에 규정된 NOC의 기본 임무와 성격을 중심으로 국제스포츠 업무, 국제대회 유치, 국제스포츠 선도 기능을 해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한국의 국제적 스포츠 활동을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으며 2032남북올림픽 공동 유치 등의 활동도 면밀한 검토와 강력한 추진이 요구된다.

일부에서는 대한올림픽위원회의 분리 시 대한올림픽위원회의 위상이 저하될 수 있다고 주장하나, 대한올림픽위원회와 대한체육회가 분리되고 각 단체의 역할과 기능이 명확해질 경우 국가대표 선수선발 및 선수단 파견 등이 글로벌 스탠더드의 조건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추진될 것이며 이 독립성과 자율성에 의거하여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게 될 것이다.

오히려 2009년 6월, 대한체육회는 국민생활체육회와의 통합 논의 주도권 확보,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의 분리 차단 등을 위해 대한올림픽위원회와 정관 통합을 단행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대한올림픽위원회는 대한체육회 산하 기구로 그 지위와 위상이 약화되었으며, 이는 NOC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올림픽 헌장 제27조 ‘NOCs의 사명과 역할’에 어긋난다.

앞으로 엘리트스포츠는 생활스포츠의 풍요로운 토양 속에서 발전, 육성되어야 하며 학교운동부, 실업팀, 스포츠클럽 등 다양한 경로와 채널을 통해 선수가 육성되는 선진적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엘리트스포츠 중 국가가 주도하는 ‘하이퍼퍼먼스(high performance) 스포츠’에 대해서는 진천선수촌 등 국가대표 훈련 센터들을 중심으로 더욱 체계적, 과학적, 합리적 방식을 통해 선발,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은 국가대표가 되어 올림픽 등 국제 스포츠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로 국가올림픽기구인 대한올림픽위원회의 책임 속에 육성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 Ⅲ. 체육단체 구조 관련 해외 사례 및 시사점

세계 여러 나라들은 저마다의 사회 상황과 역사적 전개 과정에 따라 NOC 조직과 국내 관할 체육단체를 ‘분리’하기도 하고 ‘통합’하기도 하였다. ‘분리’한 나라가 압도적으로 많지만 그러나 단순히 ‘많은 나라들이 분리 운영하므로 우리 또한 분리하자’는 식의 논리는 위험하다. 중요한 것은 각 나라들이 어떠한 조건과 맥락에서 ‘분리’ 또는 ‘통합’을 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예컨대 일본, 미국, 영국은 ‘분리’의 대표적 사례이며 독일, 프랑스는 ‘통합’의 대표적 사례인 바, 이러한 사례의 근거와 특징을 분석하여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획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 1. 분리의 경우

미국, 일본, 영국은 NOC 조직과 국내 관할 체육단체가 분리되어 있다. 미국과 일본은 올림픽 경기력 제고 또는 NOC 독립성을 목적으로 자국 NOC 조직을 국내 체육단체로부터 분리했다. 일본체육회는 1991년 일본 올림픽위원회와 분리하였다. 1980년 모스크바올림픽 참가 불허 등 일본 정부의 일본올림픽위원회에 대한 자율성 침해에 문제를 제기하고, 올림픽 경기력이 계속 하락함에 따라 본격적인 올림픽 경기력 제고를 위해 일본올림픽위원회를 독립시켰다. 분리 이후 일본체육협회는 생애체육 진흥, 국내 엘리트체육 육성 업무를 맡게 되었다.

영국은 1994년 모든 스포츠 종목에 투자하면서도 영국이 강점을 보이는 특정 스포츠 종목에 대한 중점 투자를 위해 영국스포츠위원회의 기능을 개편하기로 결정하고, 영국스포츠위원회를 엘리트스포츠를 담당하는 영국스포츠협회와 생활스포츠를 담당하는 스포츠잉글랜드로 개편하였다. 그 이후 영국올림픽협회(BOA: British Olympic Association), 영국스포츠협회(UK SPORT), 스포츠잉글랜드(Sports England)가 분리되어 각각

국제대회 참가, 엘리트스포츠 육성, 생활스포츠 증진 업무를 분담하고 있다. 이상의 사례는, 대한올림픽위원회를 분리시켜 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올림픽 경기력을 제고하는 것이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타당한 주장임을 뒷받침한다.

## 2. 통합의 경우

독일과 프랑스는 NOC조직과 국내 체육단체가 통합되어 있다. 먼저 독일은, 올림픽 경기력 담보 상태가 두 단체의 협력 부족에 기인한다는 내무부의 평가에 따라 올림픽 성적을 제고하고 예산 절감 등 재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통합했다. ‘통합’의 이유가 한국과는 다르다. 또한, 미국, 일본, 영국의 분리 사례에서 재정 효율성 문제가 야기된 바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예산 절감과 예산 사용처 명확화 등을 이유로 한 독일의 통합 사례는 전후 복구 과정, 동서독 통일 과정, 이민자 급증 등의 사회 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은 대한올림픽위원회와 통합되어 있는 대한체육회의 중심 목표가 올림픽 경기력 제고에 치중되어 스포츠인권, 학생선수 학습권, 생활스포츠 엘리트화, 과도한 엘리트지상주의의 폐해 등 문제가 구조적으로 발생하지만 독일 체육단체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즉 독일과는 다른 차원에서 대한체육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단체의 분리 및 정부의 관리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

한편, 프랑스는 드골 정부의 스포츠에 대한 개입이 강화되자 통제를 벗어나기 위하여 그리고 체육단체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NOC조직과 국내관할 체육단체가 통합했다. 중요한 것은 프랑스 역시 우리와 달리 구조적 모순이나 한계에 의한 스포츠계 인권침해와 엘리트지상주의 폐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관리 감독 필요성이 크게 제기되지 않고 있다. 한국은 상술한 문제가 수

십 년 간 지속되고 있어 대한체육회에 대한 일정 수준의 정부 감독 및 선진화 방안이 시행되어야 하다. 그러나 대한체육회가 국가올림픽기구의 독립성 명제를 내세워 자신의 자율성 논리로 활용하는 등 합당한 공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두 단체의 분리가 필요하다.

### 3. 시사점 : 자율성 보장과 공공성 강화

국제스포츠계에 영향력이 큰 이들 5개국은 모두 생활스포츠의 저변이 탄탄하고 특히 유·청소년의 생활스포츠 참여율이 매우 높은 특징을 보인다.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모두 학교스포츠 및 생활스포츠의 폭넓은 기반 위에서 엘리트스포츠가 육성되고 있으며, 그 근간에는 스포츠클럽 시스템이 존재한다. 반면, 한국은 일반 학생의 체육과 학교운동부 운영, 엘리트스포츠와 생활스포츠가 선수등록 제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분리돼 있다. 스포츠클럽 제도는 시범사업만 15년째 진행되고 있을 뿐, ‘모두를 위한 스포츠’ 패러다임을 위한 스포츠클럽 활성화에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대한체육회가 국민생활체육회와 통합한 뒤에도 올림픽스포츠 및 엘리트스포츠 육성을 주된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며, 위 5개국의 상황과 대조를 이룬다.

또한, 유럽국가 중 체육단체가 통합된 독일이나 프랑스는 한국과 달리 공공성과 자율성이 기본적으로 잘 조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학교운동부 체제가 여전하고, 국가주도 엘리트스포츠 시스템이 견고한 가운데 구조적 차원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며, 체육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가운데 그 공공성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한올림픽위원회와 대한체육회의 분리 및 단체 특성에 걸맞는 위상과 역할 방안 정립이 시급히 요청된다.

## IV. 대한올림픽위원회와 대한체육회의 미래 비전과 역할

### 1. 각 체육단체의 자율성 확보

체육단체가 대한올림픽위원회와 대한체육회로 분리되면 대한올림픽위원회는 IOC 헌장에 따라 독립성을 보장받도록 하며, 대한체육회는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기재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리·감독을 받되 ‘팔길이 원칙’에 따른 자율성은 기본적으로 확보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대한체육회가 분리 이전 회원종목 단체와 지방체육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상당히 훼손해왔던 만큼 이들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조치를 적극 취할 필요가 있다. 이에 기반하여 대한올림픽위원회와 대한체육회의 새로운 비전과 역할이 수립되어야 한다.

1) 대한올림픽위원회는 정부의 법적 관리·감독 권한을 명시할 경우 IOC 헌장에 위배되므로 조직구성(위원장 선임 등), 정부예산 지원 및 자체 수익예산 확보, 고유사업 추진에 대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

2). 대한체육회는 회장 선출 등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조직운영 및 사업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한다. 조직 운영의 경우 기관장에게 신규 채용, 승진, 전보, 징계 등 내부 조직 운영 및 각종 자문위원회 위원 임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사업 추진 시 정부와 협의 또는 승인을 통해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 후 실제 사업 실행 과정에서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이처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자율성을 보장하되 앞서 강조한 바와 같이 조직 운영, 예결산, 사업 추진 등에 있어 관계 부처의 엄정한 관리감독과 평가를 받음은 물론이다.

3), 대한체육회는 대한올림픽위원회와 분리 후 회원종목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대한체육회는 회원종목단체에 대한 임원 인준권, 각종 규정 승인권 등 규제 사항을 폐지하고, 국가대표 훈련 기획·실행 권한을

회원종목단체로 이관하여 종목별 특성 및 상황에 맞는 선수육성을 하도록 한다. 또한, 회원종목단체를 중심으로 생활·전문스포츠 육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해 이들의 사업추진 자율성을 보장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회원종목단체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회원종목단체 공통 사업은 대한체육회를 통해 예산을 간접 지원하되 회원종목단체의 의지와 관심, 효율적 사업 수행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예산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한다.

4), 대한체육회는 대한올림픽위원회와 분리 후 지방체육회의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지방체육회는 2019년 지방자치단체장의 당연직 지방체육회장 폐지에 따라 법인화 등 조직 독립성 및 자생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대한체육회는 지방체육회와의 관계를 지회에서 회원으로 개선하고, 지방체육회에 대한 임원 인준권, 각종 규정 승인권 폐지 등 조직의 독립성 및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를 통한 일부 간접지원 방식 외에 지방체육회의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모두를 위한 스포츠 사업 추진을 위한 자율사업 발굴 추진 등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지원 등 사업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 2. 대한올림픽위원회의 새로운 비전과 역할

IOC의 회원단체인 각국 NOC는 IOC의 올림픽 이념을 계승하고 스포츠를 통한 세계 평화유지와 국제우호 친선에 기여함과 동시에 올림픽 관련 사업을 그 주된 역할로 한다. 이를 위해 NOC의 정관 역시 IOC의 목적에 상충되지 않도록 IOC로부터 승인받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각국 NOC는 자국의 올림픽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국제대회 선수단을 파견하는 등 국제 스포츠 무대에 참가한다.

IOC는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지 않는 비정부 비영리 국제기구의 정체성을 갖는다. 이 기조 아래 IOC 위원을 직접 선출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

은 각 위원들이 IOC 내에서 ‘자신의 국가를 대표’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IOC 위원은 ‘해당 국가 내에서 IOC를 대표’한다. 요컨대 올림픽 정관과 정신에 비춰볼 때, 각국 NOC는 ‘국가간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개별 국가의 스포츠 대표 기구’가 아니라 올림픽 헌장과 그 정신을 개별 국가에서 실현하고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는 국제기구다.

따라서 대한올림픽위원회는 NOC로서 올림픽 이념을 계승하고 스포츠를 통한 세계 평화유지와 국제우호 친선에 기여함과 동시에 올림픽 관련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구체적 기능으로 올림픽 운동 및 올림픽아카데미 추진, 국제경기대회(올림픽 등) 선수단 파견 등 업무, 국제경기대회 유치 및 개최 지원, IOC 위원 관리·배출, 국제협력개발 등 국제사회 스포츠외교 추진, 올림픽과 연관한 지적재산권 관리 등을 들 수 있다.

이상 열거한 기본 업무 이외에도 국제 스포츠의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세계 10위권의 국가적 위상을 지닌 한국의 스포츠외교 또한 과거 개발도상국 시대와는 확연히 달라져야 한다. 단지 자국의 위상을 드높이는 것만이 아니라 스포츠를 통하여 세계 평화 증진에 기여하고 이를 위한 각종 사업이나 프로젝트를 통해 우애와 연대의 세계를 만드는데 기여해야 한다.

요컨대 ‘스포츠 외교’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야 하는 것이다. 기존의 ‘스포츠 외교’란 스포츠를 매개로 하여 국가의 외교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그러한 측면과 긍정성이 여전히 유지되는 한편 21세기의 국제 스포츠는 ‘자국 이해의 실천’만이 아니라 스포츠를 통해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 분쟁이나 인종 차별 등 지구적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것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스포츠의 공적 개발과 연대의식에 기반한 원조, 스포츠를 통한 저개발국가의 스포츠 발전 및 그 사회적 상황(인권, 교육, 문화 등) 개선 등도 ‘21세기적 스포츠 외교’다. UN이 스포츠개발평화사무국(UN Office

on Sport for Development and Peace)을 설치하여 스포츠가 지닌 잠재력을 발굴하고 평화 및 국제 개발을 위한 UN의 각종 활동에 스포츠를 접목시키고자 함이 여기에 있다.

이런 점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2032올림픽 남북 공동유치의 경우, 과거 1988서울올림픽을 유치하던 개발도상국 시대의 ‘국위선양’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세계 유일의 분단 상황에서 스포츠를 통한 진정한 평화와 화해를 호소하는 범세계적 평화 운동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여기서 새로운 관점의 대한올림픽위원회의 국제 역량 및 전문성 강화가 요구된다. 현재 대한체육회 체제하의 대한올림픽위원회 관련 업무는 사업 부서 중 하나인 국제본부에서 수행하고 있어, 대한올림픽위원회의 위상과 전문성이 약화되고 있다. 올림픽 운동을 통한 ‘국위선양’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경제적 위상에 걸맞게 세계적 차원에서 스포츠를 통해 진정한 세계 교류와 국제 연대 및 스포츠에 의한 평화의 증진에 나설 전문가 양성이 절실하다.

따라서, 현행의 대한체육회 내의 부문 조직이 아니라, 대한올림픽위원회를 분리하여 자율적, 독립적, 전문적으로 기존의 국제스포츠 외교 역량 강화 및 21세기의 국제스포츠 가치에 부합하는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대한올림픽위원회는 완전히 독립적이며 자율적인 조건에서 세계를 무대로 스포츠를 통한 평화로운 세계의 실현이라는 올림픽 운동을 세계적 차원에서 주도해 가야 한다.

### 3. 대한체육회의 새로운 비전과 역할

앞서 세계적 차원에서 스포츠에 대한 개념이 확장되고 그 가치가 스포츠 ‘바깥’의 사회적 가치들과 다양하게 결합하면서 변화되고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 대한올림픽위원회가 분리될 경우, 대한체육회는 그 업무와 역

할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시대의 변화된 가치 설정에 따라 오히려 그 업무가 ‘확장’된다. 단지 관리 감독을 받는다는 차원의 소극적인 ‘공공성’ 실현이 아니라 스포츠를 통한 복지사회 구현이라는 보다 긍정적이고 확장된 ‘스포츠 공공기관’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한체육회는 보다 중장기적인 비전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 비전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기 보다는 당대적이며 구체적이어야 한다.

예컨대 영국의 경우 1995년 "스포츠: 게임의 육성(Sport: Raising the Game)"을 수립하면서 스포츠를 세대와 사회를 건강하게 관계 맺게 하는 힘으로 규정하였다. 단순히 스포츠를 통한 사회 문제 해결 정도가 아니라 스포츠를 국민건강을 증진시켜 가중되는 의료서비스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 스포츠 참여 증대와 전 생애주기 스포츠 참여 기간 확대 등을 통해 개인의 건강 유지뿐 아니라 공동체 전반의 활력을 증대하였다.

이러한 기초 아래 각 부문의 혁신도 이뤄냈다. 이를테면 스포츠에서의 성 평등 실현을 위해 여성 개인의 장애물(personal barriers) 극복만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사회적인 현실의 장애물(practical barriers)을 해결 하는데 주력하였다. 이를 수년에 걸쳐 연구하고 실험한 끝에 2015년 1월 ‘This Girl Can’ 캠페인을 시작하여 여성의 스포츠 활동 강화를 통한 사회 전반의 성 평등 실현에 이바지하였다. 이는 2012년 런던 올림픽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인 사회 전반의 스포츠 참여율을 획기적으로 증진시켰다. 여성의 적극적 참여에 의하여 다른 성별과 친구, 가족, 이웃 및 다양한 연령대 그리고 가치적 차원에서 여러 인종과 사회 소수자의 긍정적 참여율이 높아지는 사회적 효과를 낳은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미국은 2008년 ‘미국인들을 위한 체육활동가이드라인’을 실현하였으며 프랑스는 각 스포츠연맹들이 각자의 활동 진흥뿐만 아니라 소외 계층, 이민자 등과의 사회 활동 촉진 및 연대의 강화를 위한 활동을 하였다. 스포츠클럽의 역사가 두터운 독일 또한 개인의 스포츠 활동 보장뿐만 아니라 타문화에 대한 적극적 이해 및 이민자 급증에 따른 사

회 문제의 긍정적 해결을 위해 스포츠를 활기차게 활용하였다.

이상 살핀 것처럼, 개별 국가의 스포츠 대표 단체는 단지 스포츠 분야의 자체적인 발전과 확산만이 아니라 스포츠를 통한 사회적 우애와 연대의 확산과 당대의 사회 이슈의 적극적 해결에 이바지하고 있다. 요컨대 ‘올림픽 참가’만이 국가 스포츠 정책의 핵심이 아니며 그 성적만이 ‘국위선양’의 유일한 지표가 아니라는 점이다.

대한체육회 또한 대한올림픽위원회와의 분리 이후 ▷국내 스포츠 육성 및 활성화, ▷전 국민의 스포츠 참여 활성화, ▷국내 스포츠의 공정성 및 자긍심 함양 등 본연의 역할을 변화하는 사회 상황에 맞게 적극적으로 심화하고 확장해야 한다. ‘모두를 위한 스포츠’ 정책에 기반한 엘리트 스포츠 지원 및 활성화, 학교스포츠 정상화, 스포츠클럽 활성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바, 여기에 한국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사회적 의제들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한다.

크게는 스포츠를 통한 남북간 평화 분위기 조성과 지속적인 교류, 인구 변동에 따른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스포츠의 긍정적 기능 모색, 청소년의 체력 증진으로 시작하여 스포츠를 통한 세대 갈등 완화, 스포츠클럽을 통한 사회적 고립과 소외 해결, 스포츠 내부의 성차별 해소와 스포츠에 의한 사회 전반의 성 평등 실현 등 보다 당대적이며 의제 설정적인 대한체육회의 비전과 역할이 기대된다.

이렇게 스포츠가 ‘고립된 섬’에서 벗어나 사회 속으로 들어가서 스포츠에 내재된 긍정적 가치와 힘으로 당대의 사회적 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때 소수의 엘리트체육인은 더욱 찬사를 받을 것이며 보다 많은 다수의 체육인들도 저마다의 전문 분야와 삶의 터전에서 사회적 존중을 받으며 활기차게 살아갈 것이다. 이것이 다수의 체육인과 스포츠를 사랑하는 국민 모두가 대한체육회에 바라는 새로운 시대의 ‘국위선양’이다.

## V. 결론

이상과 같은 판단에 의거, 스포츠혁신위원회는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I의 내용과 같이 권고한다. 정부는 대한올림픽위원회와 대한체육회를 분리하고 각각 독립적이며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되, 대한체육회는 자율성을 이유로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대한올림픽위원회와 대한체육회는 협력과 조정을 통해 인권, 민주주의, 자유와 평등, 다양성 등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스포츠 패러다임을 구현할 것을 위원회는 강력하게 권고한다.

2019년 8월 13일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

위원장 문경란

위원 김화복

위원 류태호

위원 배복주

위원 서정화

위 원 서 현 수

위 원 원 민 경

위 원 이 대 택

위 원 이 영 표

위 원 이 용 수

위 원 이 용 식

위 원 정 용 철

위 원 정 윤 수

위 원 함 은 주

위 원 흥 덕 기

< 권고안에 대한 이행 계획 >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올림픽위원회와 대한체육회 분리”를 주문한 스포츠혁신위원회의 권고에 의견을 같이 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해 스포츠혁신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의하는 가운데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관계기관 협의 및 실무 준비를 할 계획임

\* 정부는 권고안이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 등을 적극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국회와도 적극 협의할 계획임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추진 및 체육단체 분리 계획 수립(~'19년)
- 체육단체구조개편위원회 구성 및 운영('20년~'21년)
- 체육단체 구조개편('21년~)